

- 가. 고장 · 사고차량이 주 · 정차 금지구역에 있는 경우: 다음의 순서에 따른 통지 및 구난동의를 받을 것
- 1) 운송을 시작하기 전에 주 · 정차 가능 구역까지의 운임 · 요금에 대해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지할 것
  - 2) 주 · 정차 가능 구역에서 1)에 따른 운임 · 요금을 포함한 최종 목적지까지의 총 운임 · 요금에 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구난동의를 받을 것
- 나. 고장 · 사고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의 사망 · 중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: 구난동의 및 통지 생략 가능
6. 휴게시간 없이 2시간 연속운전한 후에는 1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가질 것. 다만, 제21조제2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시간까지 연장운행을 할 수 있으며 운행 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가져야 한다.
7. 「도로교통법」 제49조제1항제10호, 제11호 및 제11호의2의 준수사항을 위반해서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거나 영상표시장치를 시청 · 조작 등을 하지 말 것

[전문개정 2010. 12. 29.]

- 제22조의2(운행 중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조사 등)**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, 「자동차관리법」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단속원 또는 「도로법」 제77조제4항에 따른 운행제한단속원(이하 이 조에서 "관계공무원등"이라 한다)이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를 조사하여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적발했을 때에는 별지 제14호의5서식에 따른 위반사실 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.
- ② 관계공무원등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적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위반사실 확인서를 관할관청에 보내야 한다.

[본조신설 2022. 1. 28.]

- 제23조(사업의 양도 · 양수 신고 등)**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 · 양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양도 · 양수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양도 · 양수 신고서를 받은 관할관청은 양도인의 관할관청과 양도인 및 양수인의 관할 협회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의 양도 · 양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관할관청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양수인이 법인에 해당하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)를 확인하여야 한다.<개정 2018. 12. 31., 2020. 6. 17. >
1. 양도 · 양수계약서 사본
  2. 양수인이 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(양수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)
  3.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 또는 양수에 관한 그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
  4.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서. 다만, 양도 · 양수계약서 사본 등으로 차고지의 양도 · 양수가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.
  5. 양수된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사본
  6.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서(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송사업자와 위 · 수탁계약을 체결한 위 · 수탁차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)
- ③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는 해당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를 대상으로 한다. 다만, 허가기준대수 이상을 소유한 운송사업자가 허가기준대수를 초과하는 부분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대수만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.<개정 2014. 9. 19., 2018. 12. 31., 2020. 6. 17. >
1. 주사무소가 양도인의 주사무소와 같은 시 · 도 내에 있는 같은 업종의 다른 운송사업자. 이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와 충청남도는 하나의 같은 시 · 도로 본다.
  2.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자기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